

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100호
----------	-------

2019. 9. 19.

건명	논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(행정자치위원회)		
제안 및 제출자	서원의원 외 6명	제안연월일	2019. 9. 10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9. 9. 11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-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,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재원과 적립기준 등을 정함(안 제3조)
- 다. 적립된 기금의 사용기준과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라.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마. 기금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회계장부 비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- 바. 준용 규정 및 존속기한(안 제9조~제10조)
- 사. 성격이 유사하여 본 조례안에 포함시킨 「논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는 폐지함(안 부칙 제2조)

□ 검토의견

-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42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